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삭제 지원·구상권 행사·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등) 요청 방법
(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 나.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기관 범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 다.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안 제7조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과 제4조의4를 각각 제4조의4과 제4조의5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7조의3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행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2. 국가등은 제1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등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판결확정 법원 및 사건번호

나.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다. 주민등록표 초본

4. 제3호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등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2호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담
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마.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사업 내
용으로 정한 법인이나 단체

제7조 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
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 종사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중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통합지원센터
상담원”을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통합지원센터 상담원과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업무 종사자”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에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한다.

라.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중		
앙		

다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센 터 에 근 무 하 는 중 사 자		방지 관련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3급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6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4급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1년(기준2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	--	---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
마.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근무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또는 출자출연기관) 4급 이상으로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하 는 중 사 자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2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상당) 또는 공공기관에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 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 나.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통합지원센터 상담원과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업무 종사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담소·보호시설의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1) 소장	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소장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을 졸업한 사람: 4년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5년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6년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심리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

	치료사	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시설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간호사	가)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담원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3급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6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자 지 원 센 터 에 근 무 하 는 종 사 자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4급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1년(기존2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
마. 지 역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자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지 털 성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센 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또는 출자출연기관) 4급 이상으로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취득자로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에 근 무 하 는 종 사 자	2) 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담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또는 컴퓨터 공학 등의 정보통신·전산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로 1년 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로 정보처

	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 취득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상당) 또는 공공기관에 임용 후 성폭력 등 방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 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 3(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u> <u>법 제7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행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u> <u>2. 국가등은 제1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u>

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등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판결확정 법원 및 사건번호나.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다. 주민등록표 초본

4. 제3호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등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2호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라.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u>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u>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u>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u> <u>마.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정한 법인이나 단체</u> <u>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u> <u>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u>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u>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u>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